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Malaysia Non Tariff Barriers Issue

말레이시아, 트랜스지방산의 식품 내 최대 함량 기준 설정 및 식품 규정 개정 공고



WHO의 권고사항에 따라 식품 내 트랜스지방산 함량을 총지방 함량의 2% 이하로 규제 예정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공지 「[G/SPS/N/MYS/57](#)」을 통해 《말레이시아 식품 규정 1985(PU(A)437/1985)》에 식품 내 트랜스지방산(Trans fatty acid, TFA)의 최대 함량을 규정하는 '신규 조항 38B'를 추가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2024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힘

1. **배경** : 트랜스지방산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부분 경화유(PHO)와 반추 동물(소, 양 등)의 고기, 기름, 유제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동물성 트랜스지방산이 있음. 트랜스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비전염성 질환(뇌/심혈관질환, 암 등)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음. 부분경화유 등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은 건강한 성분의 오일 또는 지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분임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각 국가에서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의 식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을 권고함. 이번에 발표된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개정안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을 따른 것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총지방 함량의 2%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

2. **대상 품목** : 말레이시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

3. 말레이시아에서 규정하는 식품 내 트랜스지방산 최대 함량 기준

성분	최대 함량 기준	비고
트랜스지방산 (Trans fatty acid)	총지방 100g 당 2g 이하 (총지방 함량의 2% 이하)	※ 동물성 트랜스지방산은 규제 적용 제외

4. **시행일** : **2024년 1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후 공표 예정

트랜스지방산의 식품 사용 규제 조치 확대 중, 관련 규제 동향 및 조치 사항 꾸준히 확인 필요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은 유지제품인 마가린, 쇼트닝 등의 성분으로 사용되며, 해당 유지제품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과자, 도넛, 비스킷 등의 가공식품에도 주로 혼합되어 있음. 이처럼 일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식품에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이 함유되기 때문에, 미국, 유럽연합, 태국,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수용함.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부분경화유 등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의 식품 내 함량을 총 지방 함량의 2%이하로 규제하며, 일부는 트랜스지방산 함량에 따라 자국으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을 규제하거나 트랜스지방산이 함유된 식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라벨링 규제를 적용함. 따라서 한국에서 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경화유 및 트랜스지방산 규제 동향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트랜스지방산 함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성분에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요 국가의 트랜스지방산 규제 조치 및 시행 현황

국가	조치사항	시행 일정
미국	(2018년) 부분경화유(PHO)의 식품 사용을 대부분 금지함 (2023년) 미국 내 규정 상 예외사항으로 남아있던 부분경화유 사용 기준을 모두 삭제하는 직접적인 최종 규칙 발표	2021년 1월 2일부터 적용
EU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최대 함량을 2% 미만으로 제한	2021년 4월 2일부터 적용
태국	부분경화유(PHO)가 함유된 식품의 생산, 수입, 판매 금지	2019년 1월 9일부터 적용
싱가포르	모든 사전 포장된 식품에 부분경화유(PHO) 사용 금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식품은 단일 성분이든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성분이든 부분경화유(PHO)를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부분경화유가 함유된 가공식품은 필리핀 시장에서 제조, 거래, 수입 및 유통 금지 모든 가공식품의 라벨, 마케팅, 광고에서 'TFA-FREE', '트랜스지방 0g', 또는 '트랜스지방 없음' 등의 문구 및 표시 금지 트랜스지방 함량은 식품 라벨의 영양정보 부분에 표기 필요 	2023년 6월 19일부터 적용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경화유(PHO)를 식품 내 유해물질로 공식 승인 PHO를 함유한 유지 또는 지방 또는 둘의 혼합물을 식용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 PHO를 함유한 식품의 판매, 판매 목적의 위탁 및 배달 금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출처

Chemlinked food, Malaysia's Upcoming Reduction of Trans Fatty Acids in Food Products and Progress in Trans Fat Regulation Across Countries, 2023.11.23

EPINGALERT, G/SPS/N/MYS/57, 2023.11.17